

○出席公務員

副 区 廳 長	潘 尚 均
總 務 局 長	河 永 基
財 務 局 長	池 瑞 昌
都 市 整 備 局 長	李 相 河
建 設 局 長	朴 吉 同
保 健 所 長	金 永 浩
總 務 課 長	李 春 基

(參 照)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증개정
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4. 4. 12
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1994. 3. 24.
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: 1994. 4. 1
- 다. 상정일자: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94. 4. 12.)상정, 의결.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총무과장 이 춘기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법(1993. 12. 27. 법률 제4613호)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 규칙개정과 병행, 동 조례를 개정하여 구청장이 가진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

나. 주요골자

-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·휴직·복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권 등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.
-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위임.

• 소속공무원의 승급권을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전재)

-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합리성의 확보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보강하고 의회사무직원등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(1993. 12. 27. 법률 제4613호)이 개정됨에 따라.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규칙 개정과 병행하여 종전 구청장이 가진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임.
-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없음

5. 토론 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증개정
조례(안)

의안 번호	28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1994. 3. 24
제출자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공무원법(1993. 12. 27 법률제4613호)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규칙개정과 병행, 동 조례를 개정하여 구청장이 가진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중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.

2. 주요개정골자

-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·휴직·복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권 등을 구의회 사무국장에서 위임
-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위임
- 소속공무원의 승급권을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1991. 12. 31 법률제4464호) 제95조 제1항
- 지방공무원법(1993. 12. 27 법률제4613

호) 제6조 제2항, 제27조, 30조의 5, 제60조, 제63조 및 제65조

- 지방공무원 임용령(1993. 12. 31 대통령령 제14042호) 제7조 및 제26조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(1992. 4. 25 대통령령 제13632호) 제6조

3. 조례(안) : 별첨

4. 예산조치 필요성 : 예산조치 불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 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 제1항중 “동장 또는 보건소장”을 “구의회사무국장, 보건소장 또는 동장”으로 한다. 별표 위임사무중 “3. 인장업 폐업신고의 수리”란 다음에 “3-1. 공무원에 대한 일부임용권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-1.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

가.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·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,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(시보임용·해제포함)·의원면직

나.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전보

다. 소속공무원의 승급

-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제27조, 제30조의5, 제60조, 제63조 및 제65조
-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

-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및 제30조의 5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

위임

구의회사무국장

위임

보 건 소 장

위임

구의회사무국장
보 건 소 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조 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임사무) ①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 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. ② 생략	제5조(위임사무) ①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장,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 표와 같다. ② 현행과 같음.

신·구 조문 대조 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(별표) 위 임 사 무				(별표) 위 임 사 무			
사 무 명	근거법령	위임종류	수임기관	사 무 명	근거법령	위임종류	수임기관
〈신설〉				3-1.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			
				가. 6급이하 지 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의 의회내 전 보·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, 기능직 공무 원의 신규임 용(시보임용해 제포함)· 의원 면직	○ 지방공무 원법 제6 조 제2항, 제27조, 제30조 의 5, 제60 조, 제63 조 및 제65조 ○ 지방공무 원 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	위임	구의회 사무국장
				나. 7급이하 지 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의 소내전보	○ 지방공무 원법 제6 조 제2항 및 제30 조의 5 ○ 지방공무 원 임용 령 제7조 및 제26 조	위임	보건소장
				다. 소속공무원의 승급	○ 지방공무 원 보수 규정 제6 조	위임	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